

# 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 1. 사업 목적

-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
- 미취업·경력복귀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D 분야의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

## 2. 지원 개요

가.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연 (191.6만원/월)
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 자세한 정부지원금 산정 방법은 9쪽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연 1회 필수)  
 ※ 참여기관은 대체인력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나. 지원 규모 : 40명 내외** ※ 예산변동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 가능

**다. 지원 방법 및 기간**

- 지원 방법 :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중복신청 불가)
  -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을 시**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4대 보험 가입
- 단축제 사용자 및 대체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사후 인수인계기간(A)	0~4개월 (사전·사후 가능)	0~2개월 (사전만 가능)	해당 기간 내 자율 설정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2개월	3~12개월	
<b>총 지원기간(A+B)</b>	<b>3~12개월</b>	<b>3~12개월</b>	

※ 각 차수별 협약일 기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라. 지원 분야** :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마. 신청 일정**

구분	'20.1차	'20.2차	'20.3차	'20.4차
신청 기간	공고일~03.31.	'20.04.01.~05.31.	'20.06.01.~07.31.	'20.08.01.~09.30.
선정평가 및 풀 등록 승인	'20.04.14.	'20.06.17.	'20.08.14.	'20.10.14.
협약신청	'20.04.16.~04.30.	'20.06.18.~06.30.	'20.08.17.~08.31.	'20.10.15.~10.30.
협약일	'20.05.01.	'20.07.01.	'20.09.01.	'20.11.01.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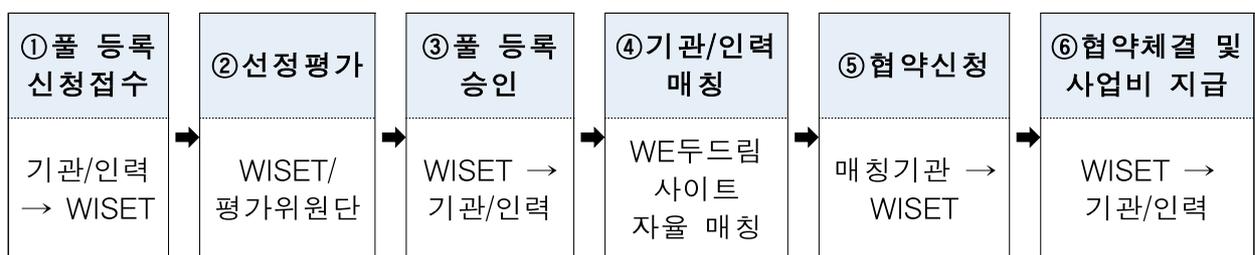
#### 가. 대체 인력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 의·약학, 치의학,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단, 수행업무가 R&D 관련 업무이어야 함)
  - ※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
  -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
- 각 차수별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예정)자
  - ※ 사업신청 시작일 : (1차) 공고일 / (2차) 2020.04.01. / (3차) 2020.06.01. / (4차) 2020.08.01.
  - ※ 채용예정자는 각 차수별 협약신청 전에 ①직전기관과의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②신청기관에 입사예정일이 확정된 후 지원가능

#### 나. 참여 기관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신용평가 등급이 **BB 이상**인 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제외)
  - ※ 상기의 신용등급 'BB'에는 'BB+', 'BB-'를 모두 포함함

### 4. 지원 절차 ※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① 풀 등록 신청접수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기관과 대체인력 모두 풀(Pool) 등록 신청하여 승인 되어야 함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09.30.까지 상시 접수

구분	'20.1차	'20.2차	'20.3차	'20.4차
신청 기간	공고일 ~ 03.31.	'20.04.01. ~ 05.31.	'20.06.01. ~ 07.31.	'20.08.01. ~ 09.30.
선정평가 및 풀 등록 승인	'20.04.14.	'20.06.17.	'20.08.14.	'20.10.14.
협약신청	'20.04.16. ~ 04.30.	'20.06.18. ~ 06.30.	'20.08.17. ~ 08.31.	'20.10.15. ~ 10.30.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풀 등록 승인 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WE두드림 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http://www.wiset.or.kr/wedodream))에서 온라인 접수

※ WE두드림 접속 및 로그인 → 배너의 신청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기관의 채용공고 업로드 방법 : WE두드림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내 'My 채용 공고' 채용공고 등록 진행

#### ○ 제출서류

- 참여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필수여부
1	신청공문	-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자체양식) - 직인 날인 필수(PDF 형태로 제출) ※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필수
2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PDF 형태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	- 참여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19년 이후 발급본 제출 ※ 공공연, 대학 제외	
6	재무제표증명원	- 2017년, 2018년, 2019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발급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 (원본/날인) 필한 재무제표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2019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제출 ※ 공공연, 대학 제외	
7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계속고용기업 관련한 증빙서류(고용보험 가입서류 등)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해당 시

- 참여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필수여부
1	사업신청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PDF 형태로 제출)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발급 - 개별사업장 이력내역서 불인정 - 각 차수별 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발급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 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처본 제출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해당 시
6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
- 공문 및 사업신청서 등에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

② 선정평가

- 풀 등록을 신청한 기관 및 인력을 대상으로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각 차수별 일정에 따라 진행

- 평가 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유 -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	30
업무역량	-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	30
역량개발 계획	-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계획의 구체성 - 개인의 R&D분야 발전 가능성	40
<b>합계</b>		<b>100</b>

- 참여 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관 역량	- R&D 수행규모 및 R&D 투자의 우수성 - R&D 수행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등	40
인력활용 계획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	30
근로환경	- 근무여건의 우수성(인건비, 복지제도) 등 -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	30
<b>합계</b>		<b>100</b>
가점	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	1
	기관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기업인 경우	1
	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	1
	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
	기관이 미래산업분야*인 경우	2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인 경우	2
	사업 수혜인력 고용유지 기관(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채용 지원 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	1

\* 미래산업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③ 폴 등록 승인

- 선정평가를 통과한 기관 및 인력 대상 후보군 폴 등록 완료
  - ※ 평가 결과 및 폴 등록 여부는 신청 기관 및 인력 대상 별도 통보 예정
- 폴 등록 기관 및 인력의 유효기간은 2년(~2021.12월)이며, 유효기간 이내에 폴 재등록 불필요
  - ※ 단,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폴 목록에서 제외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폴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폴에 등록한 후에 사업 신청 가능

④ 매칭 기관/인력 탐색

- 폴 등록 완료 후 해당 폴 내에서 기관/인력이 자율적으로 매칭 진행(WE두드림 활용)
  - ※ 예시 : (인력) 기관 폴 정보 확인하여 기관에 이력서 등 제출, 채용공고 확인  
(기업) 인력 폴 정보 확인하여 '입사지원 요청' 후 기관에 응시한 인력에 대하여 채용심사 진행 등
  - ※ 외부 채널을 통해 인력 또는 기관 매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인력 또는 기관이 상기의 ①폴 등록 신청접수~③폴 등록 승인을 받아야 ⑤협약신청이 가능함
  - ※ 폴 등록은 2년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적격대상자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력 또는 기관 매칭을 보장하지는 않음

## ⑤ 협약신청

- 매칭 완료 후 각 차수별 협약 신청 기간에 WISET에 협약신청
  - ※ 풀 등록 승인 및 매칭 완료 후, 다른 차수로 협약신청 가능
-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 사업 지원은 풀 등록 기준이 아닌 매칭 후 협약신청을 접수한 기준으로 진행

## ⑥ 기타

-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인력 교체 가능(최초 협약기간 및 지원금 변경 불가)
- 참여기관은 사업 신청 시 채용공고 등록 필수

## 5. 유의사항

- 채용한 대체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12개월 이상 채용 시) 필수
- 참여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 사업의 수혜를 받은 대체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지원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
  -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
  -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
- 참여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6.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  
- 02-6411-1011, 1064 / hhkim@wiset.or.kr, jhlee@wiset.or.kr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정부지원금 산정 안내**

□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1년 기준)
- 기준연봉 :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초과 가능)

<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175만원/월)	최대 2,300만원 (191.6만원/월)
기준연봉	2,800만원/연	3,0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협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협약기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산정

□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A(석사)의 연봉이 2,900만원일 경우

→ 석사의 기준연봉이 2,8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

→ 정부지원금 2,100만원 전액 지급

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text{계산식}] \quad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예시) 시간선택제 채용자 B(박사)의 연봉이 2,800만원일 경우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500만원)

→ 박사의 기준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

→  $\frac{\text{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text{전일제 근무 시 연봉}} \times \text{정부지원금 전액} = \frac{2,800\text{만원}}{3,500\text{만원}} \times 2,300\text{만원} = 1,840\text{만원}$

(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

## 참고 2

## 신청 자격요건

### < 동등학력 인정 >

-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산업디자인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참고 3**

**신청 제한 사항**

□ 신청 제한 사항

○ 기관 제한 사항

- 「과학기술기초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 '인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음의 '신청제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제외 기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인력 제한 사항

- 동 사업(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 및 조기 종료, 협약해약한 자 포함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온라인 신청관리 → 정부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 ※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친족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은 풀에서 제외하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참고 4 2020년 사업 연간일정

절차	내용	수행 주체
사업 공고	· 신규 참여기관 및 인력 모집 공고	WISET
↓		
풀 등록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온라인) · <a href="http://www.wiset.or.kr/wedodream">www.wiset.or.kr/wedodream</a>	참여기관 및 인력
↓		
선정평가 및 풀 등록 승인	· 선정결과 및 풀 등록 승인 통보	WISET 평가위원단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참여 기관에서 WISET에 신청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참여기관 WISET
↓		
사업 수행	·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 ·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등 · 대체인력 및 휴직자 대상 교육 실시	참여기관 및 인력
↓		
현장점검	· 사업수행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신규 지원대상 전수 시행	WISET
↓		
사업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	WISET

※ 지원 절차는 각 차수별 진행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